# Jisung Horizon Newsletter

March 2009 Vol.2. No.3

### 01 법률칼럼

■ 쓰리쎄븐을 기억하며... (구상수 회계사)

### 03 이달의 팀 소개

■ 지평지성 IP/IT팀

### 06 이달의 팀 칼럼

■ 개인정보 보호를 잘하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다 (이은우 변호사)

### 09 열려라 중국

■ 중국의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에 관한 처리규정 (김창화 중국변호사)

#### 14 생생 러시아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3)
(최수진 변호사)

#### 17 Vietnam LIVE!

■ 베트남 현지기업 경영 회생절차에 대한 소고 (김주현 변호사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 20 주목! 이 판례

■ 대법원 2009 년 2 월 26 일 선고 2006 다 24872 판 결 ( 손해배상 (기))

#### 26 최신법령

-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신설 등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만 19세로 하향 조정 등
- 신용카드업자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시석
-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 등

#### 28 지평지성 소식

■ 지평지성,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체결

#### 29 업무동향

■ 지평지성, 미래에셋 PEF 예당온라인 인수 자문 업무

### 30 지평지성 단신

- 이호원 대표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 수석부회 장 취임
- 강성 대표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LAW Regional Meeting 참석
- 임성택 변호사, 대한변협 통일법 조찬포럼 발표 / 통일부 '제3차 상생·공영 포럼' 지정토론
- 이은우 변호사, 건강정보보호법 입법 공청회 참석 및 발표

#### 32 영입인사

- 김균섭 고문
- 유정훈 변호사
- 배지영 변호사
- 유민권 변호사
- 윤재민 변호사
- 최석현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 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 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 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 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 인 생용은 법무법인 지평 인 생용은 법무인 지평 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 쓰리쎄븐을 기억하며...



구상수 회계사

상속세 세무조사 대리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속인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받지도 않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높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증가한 상속세는 고스란히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기때문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부담한 증여세만큼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누진세율로 인해 증가한 상속세 상당액은 모두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면서 이는 평등권 등 조세법상 제원칙에 반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제기하곤 합니다.

아마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의 대표적 피해자는 쓰리세븐의 상속인들 일 것입니다. 쓰리세븐은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를 평정한 중소기업으로 창업주가 생전에 그 동안 회사 의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 등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었는데, 창업주 의 사망으로 인해 이러한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에게 높은 상 속세가 과세되었고, 높은 상속세를 부담할 현실적 능력이 없었던 상속인들은 가업을 승계 하지 못하고 결국 쓰리세븐의 지분을 중외홀딩스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조항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제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상속권 및 재산권이 이 제도의 공익적 기능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고율의 상속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정책상 선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발생할 때마다 증여재산가액의 합산문제가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었고, 상속인들은 여전히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늦게 나마 입법부에서 이러한 법령의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재경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2008년 12월 23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의하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하는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위 개정안에서는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합산과세제도의 입법취지가 누진세율에 의한 고율의 상속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개정안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 중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동 제도의 입법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의 구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산의 위장분산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증여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유산의 위장분산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증여를 구별하거나 실질귀속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제도의 취지인 "고율의 상속세 부담회피의 방지"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 응능부담의 원칙 등 조세법적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Is Horizon

(이달의 팀소개)

### 지평지성 IP/IT팀

IT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해 온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IP/IT 팀은 정보통신·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실적과 경험을 쌓아 왔으며, 국내외 유수의 IT 기업들을 위하여 저작권·정보통신·전자상거래·개인정보보호·도메인네임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분쟁을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기업자산의 핵심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나날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지식과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최적의 customizing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강성 대표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이은우 변호사, 배대준 변호사, 김범희 변호사, 김지연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남수진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마상미 변호사, 임 윤선 변호사, 김영주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등 14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평지성의 IP/IT 팀은 가장 성실히 일하는 실무가임과 동시에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전자상거래(B2B, B2C, B2G, P2P 등) 관련 법률업무
- 개인정보보호, 전자화폐 및 결제, 전자계약, 사이버 범죄, 인터넷 검열, ISP의 책임 등 인터넷, 컴퓨터 등, Cyberlaw 관련 업무
- 게임, 통신, 방송, 이러닝 등 디지털컨텐츠 산업 관련 법률업무
- 솔루션, 시스템, 보안 및 정보산업 관련 법률업무
- 디지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업무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 산업재산권의 등록 및 효력에 관한 심판·소송, 침해소송의 수행
-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 및 관리
- 지적재산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 영업비밀침해의 예방 및 분쟁
- 부정경쟁행위의 단속과 분쟁 업무
- 직무발명의 관리 및 직무발명보상금 분쟁 업무
- 캐릭터 상품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업무

- 상호·상표·서비스표·도메인이름 등 브랜드 분쟁
- 지적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경고 단속 업무
- 방송법, 신문법 관련 인허가 및 자문
- 스포츠, 연예 기타 엔터테인먼트 관련 자문 및 분쟁 처리

#### 주요 실적

- K카드와 A은행 사이의 신용카드 표지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 분쟁 수행
- 국내 수위 포탈 업체 간의 서비스 사용 분쟁 수행
- B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휴대폰 게임방법에 관한 BM 특허권침해중지가처분 사건 수행
- 금융결제자동화기기, CDMA방식 통신기기 측정방법 등에 관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 반도체부품 회사 퇴사자들의 전직에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 국내외 유명 휴대폰 개발회사간 영업비밀 침해금지
- 국내 유수의 PDP 사업체간 영업비밀침해금지 관련 민사 및 형사사건
- A보안솔루션 업체를 위한 보안솔루션 및 인터넷 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 도메인이름, 게임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 금융결제자동화기기, CDMA방식 통신기기 측정방법 등에 관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 P2P 서비스, DRM 기타 디지털컨텐츠의 제작·유통에 관련된 법률 관련 자문 제공
- 국내 유수 출판사를 위한 법률자문
- 방송사와 언론사를 위한 저작권 법률자문
- 국내 유수 이동통신업체를 위한 지적재산권·정보통신업무 관련 자문
- 웹스트로지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민형사상 소송 수행
- 온라인게임업체 소스코드 유출사건에 대한 고소 대리
- 유명 제약회사를 대리한 상표권 분쟁
- 온라인게임업체를 대리한 개인정보 유출 소송 대리
- 반도체 장비회사를 대리한 영업비밀유출 사건 고소 대리
- 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 A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각종 투자계약, 전속계약, 출연계약 등 자문
- 유명 탤런트, 배우, 가수 등의 출연계약, 레코딩 계약, 전속계약 자문
- 유명 배우의 외국 제작사와의 국제중재 분쟁 수행
- K 투자회사의 영화투자배급계약 관련 자문
- D방송 등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관련 분쟁 수행

### [담당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이은우 변호사



배대준 변호사



김범희 변호사



김지연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남수진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임윤선 변호사



김영주 변호사





JS Horizon

(이달의 팀 칼럼)

### 개인정보 보호를 잘하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이은우 변호사

미국의 권위 있는 개인정보 관련 조사컨설팅 기관인 Ponemon Institute가 2008년도의 미국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비용을 조사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개인정보 침해 1건당 평균 202달러(약 29만7천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손실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통지하는데 1건당 15달러가, 고객 응대하는데 39달러의 비용이 든데 비해, 고객 이탈로 인한 사업손실은 1건당 무려 139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소송의 나라'라는 미국이지만 손실의 대부분은 소송 때문이 아니라, 고객 이탈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들에게 통지된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집계된 것만 해도 약 2억5천만건이 넘으니, 2008년도 기준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침해 기업들은 약 4년만에 5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셈입니다. 한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나면 쉽게 100만건 이상의 노출로 연결되는데, 그 경우 기업은 단 한번의 사고로 2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아무리 초일류 기업이라도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손실이 아닐 수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잘 막는다면.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비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4년 사이에 개인정보 침해를 잘막은 경쟁기업들은 약 350억 달러의 사업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100만건의 개인정보 노출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기업은 1억4천만 달러의 사업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으로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럼 개인정보 침해를 잘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험을 보면,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개인정보 침해 통지 대상 사고의 70% 정도가 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60%가 노트

북, 컴퓨터, USB와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의 분실이나, 도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나, 해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5%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보면 철저한 물적, 전자적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지만, 아무리 설비가 훌륭해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직원들의 부주의를 막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저장장치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것을 막는 일이 화급한 일입니다.

실제로 2008년에 Dell과 Ponemon Institute가 미국의 모든 공항을 조사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주 공항에서 출장길에 평균 12,000대 이상의 노트북이 분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애초부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노트북에는 개인정보를 담아서는 안되고, 작업 후에는 즉시 완벽하게 삭제하고,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고, 노트북을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철저하게보안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부 직원 뿐만 아니라, 위탁 업체나, 용역 업체, 자문 업체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Ponemon Institute에서 2008년 미국을 조사했을 때, 제3자에 의한 침해가 44%에 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점점 아웃소싱이나 외부 자문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미국에서도 제3자에 의한 침해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 제3자와의 관계를 챙기고, 다시 챙길 일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관건은 내부에 있는데,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기업은 내부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설사 내부 접근통제 관리정책(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라도, 위험을 막는데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는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교육이고, 그 결과 형성되는 기업의 보안문화가 가장 훌륭한 보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철저한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이 모든 직원의 몸에 배도록 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면, 두배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안에 보안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보고하게 하고, 신고에는 보상을 하고, 보안정책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소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불가결한 것만으로 개인정보의 규모를 줄이고, 개인정보에 잠금장치를 두고, 작업시에만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거나 떠날 때는 방치하지 말고, 매일 일과를 마칠 때는파일을 치우고, 로그오프를 하고, 열쇠를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외부로 수송할 때도 보안과 암호처리를 하고, 대장에 기록하고, 추적가능한 서비스만 이용해야 합니

다. 사용이 끝난 개인정보는 주기적으로 폐기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낡은 컴퓨터나 저장장치를 버릴 때는 복구할 수 없게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집에서도 직원들이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기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고, 훈련을 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 그 동안 많은 기업에서는 직원이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분실해도 직원은 회사에 신고조차 않는 경우도 많았고, 기업도 그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영국의 경우 StrongMail Research가 2008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국의 61%의 기업이 24개월 이내에 고객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험이 있으나, 90%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경우와 비슷한 수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유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들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침해 통지제도'(Data Breach Notification)를 약 44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 영국과는 반대로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기업의 95% 이상이 개인정보 침해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정보 침해를 덮어둘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더 각별히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이 제도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제안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개인정보 침해 통지제도'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 한 건의 개인정보 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삼는다면, 그 기업에게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소비자에게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Is Horizon

(열려라 중국)

### 중국의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에 관한 처리규정



김창화 중국변호시

#### I. 들어가며

중국의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공업화, 도시화와 경제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형식과 노동관계는 더욱 다양해지고 노동고용분야에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인사분쟁이 매년 증가하였는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의 통계에따르면 2004년 중국 전국의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한 중재사건은 26.1만 건, 2005년에는 31.4만 건, 2006년에는 44.7만 건, 2007년에는 35만 건, 2008년 1-3분기에만 52만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이하 '조정중재법') 등을 제정 및 시행하였고 2009년 1월 1일 부터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사건처리규칙" 과 "인사분쟁사건처리규칙" (이하 '과거규정'으로 통칭)을 통합 및 업그레이드시켜 새로운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勞動人事爭議仲裁辦案規則, 이하 '규칙')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은 노동인사분쟁사건 중재 과정 중 분쟁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였을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였다. 본 칼럼에서는 규칙의 주요규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Ⅱ. 규칙의 주요규정 분석
- 1.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분쟁범위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가 조정중재법 또는 과거규정에서 규정한 범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분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sup>1)</sup>

- (1) 기업, 개인사업자, 법인격이 없는 민간업체 등 조직과 근로자 간,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간에 노동관계 확인,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와 해지,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교육 및 노동보호, 근로보수, 산재의료비용,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한 분쟁
- (2)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고용제 공무원 간,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기관과 고용된 근로자 간에 고용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 (3) 사업단위와 근로자 간에 제명, 해고, 이직 등 인사관계 및 고용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 (4) 사회단체와 근로자 간에 제명, 해고, 이직 등 인사관계 및 고용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 (5) 군대의 문직인원(文職人員) 고용업체와 문직인원 간에 고용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 (6) 법률, 법규에서 중재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기타 분쟁
- 2. 중재사건의 처리 워칙

중재위원회가 분쟁사건을 처리할 경우 합법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기에 중재판정을 해야 합니다.<sup>2)</sup>

만약 근로자 측이 10명 이상인 분쟁일 경우 또는 집단노동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분쟁일 경우, 중재위원회는 우선 입안하고 심리할 수 있습니다.<sup>3)</sup>

- 3. 중재사건 분쟁 당사자에 대한 규정
- (1) 근로자 측면에서의 분쟁 당사자

분쟁과 관련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업체의 노조가 중재사

<sup>1)</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2 조.

<sup>2)</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3 조.

<sup>3)</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4 조.

건의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노동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노동 분쟁에 대해 협상을 거쳐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노조가 직접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 노조가 없다면 상급 노조가 근로자들을 지도하여 대표 자를 선출한 이후 동 대표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sup>4)</sup>

분쟁이 발생한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3-5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중재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동 대표자들이 중재에 참여하는 행위는 피대표 당사자들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표자가 중재청구를 변경, 포기 또는 상대방의 중재청구를 승인하거나 화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대표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5)

### (2) 고용업체 측면에서의 분쟁 당사자

경영 중인 고용업체는 당연히 분쟁 당사자가 되지만 분쟁이 발생한 고용업체가 영업허가 증을 말소 당하거나, 공장 폐쇄, 철폐를 명령 받거나 고용업체가 사전에 해산, 휴업을 결정하여 관련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 투자자, 설립업체 또는 주무부서가 공동 당사자가 됩니다.<sup>6)</sup>

근로자와 개인도급경영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 도급을 주는 업체와 개인도급경영자를 당사자로 합니다.<sup>7)</sup>

#### 4. 중재신청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조정중재법 제 27 조에 따르면 노동분쟁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는 당사자가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날부터 1년 입니다. 규칙은 조정중재법보다 시효중단 또는 정지의 경우를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시효중단의 경우는 (i) 일방 당사자가 협상, 조정의 신청 등 방식으로 상대 방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ii) 일방 당사자가 관련부서에 신고, 중재위원회에 중 재신청, 인민법원에 소 제기 또는 지불명령의 신청 등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iii)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동의한 경우가 포함됩니다.8)

규칙에 따르면 시효정지의 경우는 (i) 불가항력, (ii) 금치산 근로자와 한정치산 근로자의 법정대리인의 미확정 등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 내에 중재를 신

<sup>4)</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5 조.

<sup>5)</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6 조, 제 7 조.

<sup>6)</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8 조.

<sup>7)</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9 조.

<sup>8)</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10 조.

청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sup>9)</sup> 아울러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중재시효는 정지됩니다.

5. 입증책임 및 사건기록의 열람제도

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사항과 관련된 증거를 고용업체에서 관리할 경우 고용업체는 이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sup>10)</sup>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sup>11)</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칙은 중재위원회에 사건기록 열람제도를 수립하고 비밀유지가 필요 없는 내용에 대해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열람 및복사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sup>12)</sup> 이는 과거규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중재사건기록의 열람을 금지했던 것에 비해 질적인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중재사건 처리기한에 대한 제한

규칙은 중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중재사건 처리과정 중 중재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진행되는 매 절차마다 중재위원회의 사건처리 기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중재사건 종결 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재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사건이 복잡하여 종결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의 인가를 받아 기한을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sup>13)</sup> 이는 중재위원회가 중재법정을 구성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특수한 경우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과거규정에 따른 중재사건 종결기한을 거의 1개월 단축시킨 것입니다.

중재 당사자들은 중재위원회가 상기 기한 내에 중재판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는 중재사건의 심리를 종결해야 합니다.<sup>14)</sup>

<sup>9)</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11 조.

<sup>10)</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17 조.

<sup>11)</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19 조.

<sup>12)</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26 조.

<sup>13)</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44 조.

<sup>14)</sup> 노동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 제 47 조.

### Ⅲ. 마치며

중국의 노동관련 법률제도가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자신의 권리보호 의식 및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고됨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은 근로자가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규칙은 중재 과정 중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업체는 노동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규칙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노동분쟁의 중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JS Horizon]

(생생 러시아)

###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3)



최수진 변호사

-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1)
-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2)
- 4. 비사법기관 중재원, 국제상사중재원
- 가. 중재원
- (1) 의의

중재원은, 비사법기관으로서 법관이 아닌 각 직역의 전문가들이 분쟁의 해결사로 판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낮은 비용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원할 때 중재 절차를 이용하곤 합니다.

중재원은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설중재원과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설치되는 임시중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의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상설중재원이 당해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은 임시중재원의 구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2) 요건

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재수수료는 신청가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상설중재원

의 경우 각 중재원마다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3) 절차

중재원의 절차는 중재법원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우선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재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검토합니다. 중재합의가 적절하다면 중재 절차를 개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재 신청을 각하합니다.

다음으로 양 당사자는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중재원은 쌍방의 주장을 검토한 후, 러시아연방법령, 지역법령 및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중재판정을 합니다. 중재판정은 문서로 이루어지며, 중재판정문에는 판정일자, 중재인 성명, 심리 장소·시간, 당사자의 성명과 대리인의 지위, 쟁점사항 및 당사자의 주장, 중재인의 판정이유 및 근거법령, 판정결과, 중재인의 보수와 사건심리와 관련된 비용의 분담, 이행기간과 절차가 명시됩니다.

### (4) 중재판정의 효과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중재판정에 근거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기간 내에 중재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재법원에 강제집행명령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의 판정은 중재법원의 판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원에서의 분쟁해결은 심급제가 적용되는 중재법원에서의 분쟁해결에 비해 신속하게 종결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나. 국제상사중재원

#### (1) 의의 및 요건

국제상사중재원은 러시아 연방상공회의 부속 기관으로서, 국제 상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합니다.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두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절차 및 효과

국제상사중재원에서의 절차도 중재원에서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인 선임 절차를 거친 후 양 당사자의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공방은 서면심리만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변론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이나 변론은 러시아어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계약 내용 및 해당 상거래 관습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중재판정의 집행은 러시아 내부에서의 집행인 경우 러시아연방 민사소송법에 따르며, 러시아 외부에서의 집행인 경우 러시아연방 및 해당국간의 국제조약에 따르게 됩니다.

### (3) 사례

국내 뉴스에서 러시아와 관련하여 국제상사중재원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한 것은, 2005년 경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던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사업 참여와 관련된 기사일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산하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은 사할린에서 추진하는 유전사업에 참여하고자 러시아 알파에코 그룹에게 계약금 6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결국 해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철도교통 진흥재단은 러시아 알파에코 그룹에게 해지의 효과로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 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알파에코 그룹은 계약금에서 사업추진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은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 제상사중재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제상사중재원은 기업들의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 공정하게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법기관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서에 미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둠으로써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5. 결론

3회에 걸쳐 러시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여러 면에서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글이 부족하나마 기업활동을 하는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Is Horizon

(Vietnam LIVE!)

### 베트남 현지기업 경영 회생절차에 대한 소고



김주현 변호사 • 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베트남 기업의 경영회생절차는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회생절차는 2006년 이전에는 파산법과는 별도의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4월부터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 채무자회생법이 폐지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별칭 "통합도산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도산법 하에서도 파산절차와 기업회생절차가 통합되어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단계에서부터 별도의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은 신청 당시 파산절차를 이용할 지,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할 지를 선택해야합니다. 즉 현행 통합도산법은 복수의 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함께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전의 체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반면 베트남 파산법에 의하면 기업경영 회생절차가 파산절차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기업경영 회생절차개 시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신청자가 파산절차 또는 기업경영 회생절차를 선택해서 신청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경영 회생절차를 구하고자 파산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하 베트남 현지기업의 기업경영 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경영 회생절차 회부 절차

파산신청자, 즉 파산기업의 무담보채권자, 피고용인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피고용인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 파산기업의 법적 대표, 주식회사의 주주 등에 의한

파산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파산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파산기업의 자산 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채권자리스트가 작성되는데, 재판부는 자산 재고조사 또는 채권자리스트의 작성이 완료된 후, 30일안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기업의 소유자 또는 기업대표는 기업경영구조조정안 및 파산채권자들에 채무변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경영 회생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에 대한 승인이 의결되고, 파산기업에게 기업경영회생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의결이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기업경영회생절차 회부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의해 기업경영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 2. 기업경영 회생계획의 내용

파산기업은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안에 기업경영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파산채권자 또는 기업경영회생계획을 위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위 기간 안에 기업경영 회생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경영 회생계획은 기업경영회생에 필수적인 조치, 채무변제의 조건, 기한 계획 등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필수적인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자본의 증자
- 생산품 및 사업분야의 전환
- 생산성 및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조직의 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생산부문의 분리
- 파산채권자에 대한 지분의 매각
-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 또는 임대
- 기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치

#### 3. 기업경영 회생계획의 심리, 승인, 인가

재판부는 기업경영 회생계획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그 계획을 심리한 후,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채권자집회에 계획을 제출하는 결정을 하거나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청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집회에 계획을 제출하는 결정을 한 후 10일안에 그 계획을 심리, 결의하는 채권자집회를 열어야 하며, 채권자집회에서 계획에 대한 심리, 토론을 거친 후, 적어도

무보증채권액의 2/3이상을 대표하는, 집회에 출석한 무보증채권자의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을 거쳐 계획은 승인됩니다.

위 승인결의가 있은 후 재판부는 파산기업의 기업회생계획에 대한 승인결의를 인가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이러한 인가결정은 모든 이해당사자를 구속합니다.

#### 4. 기업경영 회생계획의 실행

재판부가 기업경영 회생계획 승인결의 인가결정을 한 후, 파산절차진행을 위한 관리위원 회는 해산되며, 매 6개월마다 한번씩, 기업은 재판부에 계획의 실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파산채권자는 계획실행을 감독할 책무를 집니다.

기업경영 회생계획 실행의 최장기간은 계획 승인결의 인가결정이 신문에 공표된 마지막 날로부터 3년입니다.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파산채권자와 기업은 일정한 요건하에 회생계획의 수정, 보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 5. 기업경영 회생절차의 종결

파산기업이 회생계획의 실행을 완료한 경우, 아직 변제되지 않은 무보증채권액의 2/3이상을 대표하고, 무보증채권자수의 과반수가 중단에 동의한 경우에 재판부는 기업경영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 경우, 그 기업은 더 이상 파산기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 6. 기업경영 회생절차 승인결의 후 환가절차 개시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기업경영 회생계획의 제안을 승인하고, 기업에 회생계획의 제출을 요구한 후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환가절차 개시결정을 해야 합니다.

- 파산기업이 기업경영 회생계획의 제출을 요구 받은 후, 기업경영 회생계획 제안에 대한 승인 결의 후 30일안에 기업경영 회생계획을 작성하는 데 실패한 경우
- 채권자집회에서 기업경영 회생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 기업이 회생계획을 실행하거나 정확히 실행하는 데 실패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Js Horizon

(주목! 이 판례)

### 부당한 채권가압류와 불법행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년 2 월 26 일 선고 2006 다 24872 판결

- 사건명 : 손해배상 (기)

1. 제소·응소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1) 원칙 - 재판을 받을 권리의 존중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등).

(2) 예외 -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요건에 관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①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② 제소자가 그와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제기하는 등 ③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판결 등).

- 2. 보전처분 등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1) 보전처분의 경우

위와 같은 본안소송의 경우와 같이 대법원은 부당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요건 아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 니다. 즉 대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 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 고 2002다35461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일관되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 (2)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한편 부당하게 강제집행, 담보권실행경매를 정지시키는 잠정처분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 32126 판결), 또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이를 근거로 …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여, 그 잠정처분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있음이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 (3) 과잉 가압류의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소송행위 중 일부에 관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4)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의 공동불법행위

대법원은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가 집행채권자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채권자 아닌 자가 "가처분 신청의 재판비용을 갹출하고 가처분 신청이유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처분 신청의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채권자의 부당한 가처분을 도운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도 집행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이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임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보전처분 신청을 하게 만든 경우에는, 그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 3.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처분금지가처분은 개념상 목적물의 환가 등 그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①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처분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② 가처분 집행 당시 소유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환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하며, 다만 ③ "만일 그 부동산의 환가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한편 ④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경우에는 '분양' 자체가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 칙으로 돌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지 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속한다"고 합니다.

(2)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대법원은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②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③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임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압류의 집행 이외의사정 등 가압류채권자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경매절차정지로 인한 통상손해(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부당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경매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해 대법원은 "정지된 기간 동안 경매 목적물의 가격에 현저한 등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면 일찍 받았을 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인데, "경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지연된 것"이고, "금원의 수령이 지체되어 이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배당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통상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4) 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손해(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대법원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율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5) 정신적 손해 등의 특별손해

한편 대법원은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또한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다른 한편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져 매도인(집행채무자)이 지급한 위약금'에 관해 대법원은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는 것을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위약금 지급과 위 가압류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동일한 취지에서 "매매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처분집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 위 위약금 지급과위 가처분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 4. 대상판결의 내용과 의의

#### (1) 사실관계

원고 甲은 예금의 명의인으로서 예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피고 乙은 "자신의 채무자인 소외 조합 丙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보전한다"고 하면서 위 예금을 예금종류, 계좌번호, 소관지점 등으로 특정함과 아울러 위 예금채권에 대해 "이것은 丙이 甲 명의를 빌려 예치하여 둔 丙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

다.

이에 법원은 그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발령하고 그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乙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가압류 집행이 해제된 직후까지도 위 예금 중 가압류된 금액 상당액을 인출할 수 없었고, 이에 乙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 대상판결의 요지와 의미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먼저 "가압류의 대상채권이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대법원은 "제3채무자(즉 은행)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원고 甲)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로서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는 위 부당한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예금채권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피고  $\angle$ 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결국 대상판결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 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년 2 월 26 일 선고 2006다24872 판결 Is Horizon

(최신 법령)

- 1.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신설 등
-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제9466호)
  -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별도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법제218조의5, 제218조의8 내지 제218조의13 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에 등재된 재외국민은 재외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15조 제2항제2호등에 따라 국내거소를 신고하여 60일 이상 국내거소인명부에 등재된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2) 다운로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제 9466호)
- 2.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만 19세로 하향 조정 등
- :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 제9468호)
  - 1)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마찬가지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2)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결정)에 따라 개정된 것입니다.
  - 3) 다운로드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제9468호)
- 3.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신설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9459호, 2009. 8. 7. 시행)

- 1) 법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2) 법 제54조의3을 신설하여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금융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다운로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제9459호)
- 4.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 등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9437호 2009. 8. 7. 시행)
  -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대형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 제14조가 개정되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로 처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가 확대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해지는 한편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운로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9437호) IS Horizon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와 김이태 변호사는 3월 10일, 노동부가 주최하고, (사)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세스넷)와 (재)함께일하는재단 등이 주관하는「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식」은 국내 첫 '프로보노(Pro Bono)' 협약식으로, 협약 체결에 대한 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노동부장관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저희 지평지성을 비롯한 주요기업·공기업, 전문가협회·단체 등 43개소가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u>작년 11월에 개최된 세스넷 정선희 이사님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공익강연을</u> <u>계기</u>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 세스넷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등 무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관련 사이트]



노동부 -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 [관련기사]

- 대한민국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포털 사회적기업, 비상(飛上)의 날개를 달다
- 중앙일보 영세 사업체에 노하우 기부 ... 기업 나눔봉사도 진화한다
- 서울신문 43개 기업·노동부 '사회적 기업' 지원 협약

(업무동향)

### 지평지성, 미래에셋 PEF 예당온라인 인수 자문업무

3월 4일자 일간지에 온라인 게임업체 예당온라인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미래에셋PEF 계열 시니안 유한회사에 매각됐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미래에셋PEF를 대리하여 예당온라 인 인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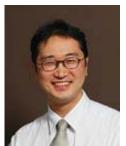
#### [관련 기사]

- 연합뉴스 예당온라인, 미래에셋에 인수
- 매일경제 미래에셋 PEF 예당온라인 인수
- 뉴시스 미래에셋PEF, 예당온라인 최대주주로…지분 36.48% 인수

###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정철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지평지성 단신)

### 이호원 대표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 수석부회장 취임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는 3월 5일 국제거래법학회 정기 총회에서 수석부회장 겸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국제거래법학회는 2009년 사업으로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과 산하연구회로 국제금융법연구회, 국제에너지법연구

회, ISD연구회 및 국제매매법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JS Horizon

### 강성 대표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LAW Regional Meeting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와 홍진경 미국변호사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필리 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LAW regional meeting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성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M&A업무'를, 홍진경 미국변호사는 '한국 시장의 금융 및 M&A시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08년 3월 14일, 국제 로펌 네트워크인 LAW (Lawyers Associated Worldwide) 에 가입한 바 있으며, 한국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유일한 회원입니다.

# 임성택 변호사, 대한변협 통일법 조찬포럼 발표 & 통일부 '제3차 상생·공영 포럼'지정토론



(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대한변협 통일문제 연구위원회와 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의 공동주관으로 서초동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통일법 조찬포럼에서 '남북한 주 민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에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를 어느 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임성택 변호사는 2월 27일,통일부 주최의 '제3차 상생·공영 포럼'에 참석하여 지정 토론을 하였습니다. Is Horizon

### 이은우 변호사, 건강정보보호법 입법 공청회 참석 및 발표



(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은우 변호사는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 건복지가족위원회 건강정보보호 관련법 제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법 제정에 앞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관련기사]

• 보안뉴스 - 건강정보보호법,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영입인사 ①)



김균섭 고문 kskim@js-horizon. com

#### □ 학력사항

- 부산고등학교 제22회 졸업
-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 졸업 (69학번)
- 미국밴더빌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 뉴밀레니엄 디자인혁신정 책과정 수료

### □ 경력사항

- 제9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상공부 기계공업국 근무
- 특허청 심사1국 원동기계심사담당관
- 상공부 기계공업국 정밀기계과 과장
- 독일GID연구소 객원연구원
- 상공부 산업정책국 산업진흥과 과장
- 대통령비서실 산업담당비서실 행정관
- 상공자원부 상역국 수출1과 과장
- 상공자원부 상역국 수출진흥과 과장
-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과 과장
- 상공자원부 부이사관
-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관리본부 본부장
- 국방대학원 파견
- 통상산업부 제네바대표부 참사관(국장급)
- 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장 (이사관)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국장 (이사관)
-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 실장
- HSD엔진(현 두산엔진)주 대표이사 사장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사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駐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대사
- 현 KOTRA 사외이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평지성에 새롭게 참여한 김균섭 고문입니다. 저는 1974년 당시 상공부에 첫발을 들여 놓은 이후 20여년 동안 기업의 투자촉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기술개발 및 기업혁신 정책 등 다양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산업정책과 무역촉진 정책 등 기업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

며, 제네바 상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제통상업무도 경험 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전략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많은 경험과 이해, 사회적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원개발과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 경험도 체득한 바 있습 니다.

저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고객 여러분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영입인사 ②)



유정훈 변호사 yoojh@js-horizon. com

### □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 경력사항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대한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공익법무관
- 전주지방검찰청 송무팀(국가, 행정소송담당, 국가배 상심의담당)
- 대한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공익법무관
- New England School of English 연수(Cambridge)
-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 법무법인 세화 Sewha Cambodia Law Group in Phnom Penh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 인사말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일여 년 간 법무법인 세화에서 캄보디아 지사장을 맡아 법률업무를 해 왔으며, 금번에 아시아 대표 글로 벌 전문 로펌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합류하여 훌륭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넘어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반도 전반에 걸친 자문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고객과 함께 해외에 나가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책상에서 하는 법률업무가 아니라 현장에서 고객이 고민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야말로 고객이 원하는 변호사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념을 지키고 살기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지평지성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 Horizon

### (영입인사 ③)



유민권 변호사 mkyou@js-horizon .com

### □ 학력사항

- 경기진성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 경력사항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 인사말

금번 지평지성에 입사하여 소송파트에서 일하게 된 신입 변호사 유민권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제38기로 수료하였으며 지평지성에서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송 파트 소속으로 소송 및 중재, 기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금융이나 건 설·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것입니다.

많은 유능한 선배 변호사님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데 감사 드리며, 앞으로 고객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성심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 Horizon

### (영입인사 ④)



배지영 변호사 jybae@js-horizon.c om

### □ 학력사항

- 서울여자고등학교 졸업
-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입학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재학중

#### □ 경력사항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LG-CNS 근무(system engineer)
- 사법연수원 이슬람법학회 창립/학회장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회사파트에서 일하게 된 배지영 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변호사로서의 삶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실력과 뜨거운 열정을 겸비하신 지평지성의 선배 님들과 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을 본받아 현재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세상을 넓게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변호 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평지성 구성원분들과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IS Horizon

### (영입인사 ⑤)



윤재민 변호사 jmyoun@js-horizo n.com

### □ 학력사항

- 울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경력사항

- 제48회 사법시헙 합격
-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윤재민입니다.

2009년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같은 해 3월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 금융파트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 사 등에 관한 금융 자문 업무를 주요 업무분야로 하여 변호사로서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외에 도 도산 및 노사관계 등의 기업일반 분야에 대하여도 깊 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이 출발하는 저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변호사' 입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행복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 Horizon

### (영입인사 ⑥)



최석현 전문위원 shc@js-horizon.co m

### □ 학력사항

- 전주해성고등학교 졸업
-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

### □ 경력사항

- 광주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 대주/가덕 세무법인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전문위원 (조세담당)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최석현입니다.

저는 1991년도부터 조세관련 업무 중 국세공무원으로서 현장중심의 세무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2002년도 국세청에서 퇴직 후, 세무법인에서 상장사 세무조정업무와 외감 비상장법인 CEO지분승계를 통한 기업승계전략수립, CEO 절세 퇴직 프로그램 컨설팅, 상속·증여세 재원마련 및 세액납부전략수립, M&A(우회상장)컨설팅, 기타 특화된 모의세무조사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그리고 세무조사 수감에 임하여 세법의 적용문제에 있어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절세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관해 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진정 중소기업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실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서 조세법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또한 정확한 금융 추적조사로서 법인대표명의가 아닌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고발조치 하는 국세청의 강력한 처분이 늘고 있는 시점에 있어, 저는 중소기업 CEO나 주주들의 관심과 요청사항이 무엇인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도에 맞게 그 의도한 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 Horizon



http://www.js-horizon.com

###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11층 Tel: 02)6050-1600 Fax: 02)6050-1700

**강남분사무소** (135-9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4층 Tel∶02)2009-7500 Fax∶02)2009-752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610

상해 지사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 86-21-5208-2807

호치민시티 지사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910-7510 Fax: 84-8-910-7511